

###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672호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1. 제안이유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주거약자용 주택에 의무설치하는 편의시설의 설치 범위를 확대하여, 독거노인의 고독사나 응급상황에 대한 조기대응이 가능하도록 함.

##### 2. 주요내용

가. 별표 1 제4호 비상연락장치에 일정기간 동작이 없는 경우 자동연락되는 장치를 추가(안 별표 1)  
국민·영구·행복주택 중 주거약자용(장애인,고령자,유공자) 주택에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거약자용 주택에 독거노인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작이 없으면 관리소 등으로 자동연락되는 비상연락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3. 의견제출

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로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서 2018년 1월 23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044-201-3355, 3361, 팩스 044-201-5531)

###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683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2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유)삼우엔테크(여은주)

나. 전화번호 : 042-822-4143

2. 명칭 : 철도 노반용 전력케이블의 이동식 3열 동시 포설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철도 / 신호 및 제어

토목 / 철도 / 철도 유지보수보강

<기술의 요지>

철도 시스템의 요구 전력 송전을 위해 포설되는 특 고압 전력 케이블 지중배전을 위한 경제적인 포설 공법으로서, 포설 중 케이블 외상 및 구조 손상의 감소를 목적으로 개발된 신기술이다. 기존의 견인 설비에 의한 고정식 구간 포설과 달리, 다수의 케이블 드럼을 적재한 차량과 케이블 정렬 가이드를 이용하여 인력에 의한 다수의 케이블 포설과 이동이 동시에 가능한 기술이다.

<범위>

다수의 전력 케이블 드럼을 적재하고, 각 드럼의 독자적인 풀림 조절이 가능한 프레임이 일반 차량 또는 레일 차량에 적재될 수 있으며, 케이블의 포설 중계를 위한 케이블 정렬 가이드가 포함되어, 철도 노반용 특 고압 케이블의 지중 포설을 위한 이동식 포설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해양수산부공고제2017-974호

2018년도 도선사시험 시행

도선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2018년도 도선사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

1. 도선구별 선발인원

(단위 : 명)

선발인원	부산항	인천항	여수항	대산항	울산항	마산항	군산항	평택·당진항
20	3	3	5	2	4	1	1	1

2. 응시자격

가. 2017년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에 합격한 후, 도선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도선 실무수습을 완료한 자

나. 도선법 제6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